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297 호 |
| 의결년월일 | 1995. 7. 31. (제 35 회) |

의
결
사
항



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
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의자 | 박태공의원 외 3인 |
| 발의년월일 | 1995. 7. 21 |

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297 |
|----------|-----|

발의년월일 : 1995. 7. 21

발의자 : 박태공의원외 3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('95. 7. 1 대통령령 제14703호)으로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불합리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제10조 조령중 "일비"를 "수당"으로 하고,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"일비"를 각각 "수당"으로 한다. (안 제10조 조령, 제10조제1항, 제2항)
- 나. 제11조 조령중 "일비"를 "수당"으로 하고, 동조제1항의 "일비"를 각각 "수당"으로 한다. (안 제11조 조령, 제11조제1항)
- 다. 제13조중일비의 지급기준을 "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"로 변경 (안 제13조)

3. 본 문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조령중 "일비"를 "수당"으로 하고,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"일비"를 각각 "수당"으로 한다.

제11조 조령중 "일비"를 "수당"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"일비"를 각각 "수당"으로 한다

제13조중 "일비"를 "수당"으로 하고, "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"를 "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10조(일비의 지급)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<u>일비를</u> 지급한다.</p> <p>② <u>일비</u>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.</p> | <p>제10조(수당의 지급) ① ----- ----- <u>수당을</u> -----</p> <p>② <u>수당은</u> ----- -----</p> |
| <p>제11조(일비의 계산)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<u>일비</u>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. 다만, 위촉기간 만료이후 <u>의회</u>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<u>의회</u>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<u>일비를</u> 지급한다.</p> | <p>제11조(수당의 계산) ① ----- --- <u>수당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당을</u> -----</p> |
| <p>제13조(지급기준) <u>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</u>는 <u>고성군의회</u>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.</p> | <p>제13조(지급기준) ----- <u>수당</u> ----- --- <u>고성군의회</u>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----- -----</p> |